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1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6. 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「지방재정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(2006. 1. 1시행)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부 정리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0조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1조” 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” 로 변경(안 제1조)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21조를 제26조로 변경(안 제2조, 별지 제2·4호서식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26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6. 4. 25 ~ 5. 15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

제1조중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10조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21조의” 를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26조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영 제21조제1항” 을 “영 제26조” 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1조” 를 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6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0조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제26조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2조 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</b>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<b>제2조 (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)</b> ①영 제26조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